

[별표 12] <개정 2011.11.25>

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(제20조제3항 관련)

1.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

구분	안전점검자	자격	인원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	충전원	별표 22 제4호나목3)의 교육을 받은 자	충전 소요인력
	수요자시설 점검원	별표 22 제4호나목2)의 교육을 받은 자	가스배달 및 점검 소요인력
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	수요자시설 점검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은 자	수용가 3,000개소마다 1명
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	수요자시설 점검원	별표 22 제4호나목2)의 교육을 받은 자	가스배달 및 점검 소요인력
비고: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할 때에는 그를 안전점검자로 본다.			

2. 점검장비

- 가. 가스누출검지기
- 나. 자기압력기록계
- 다.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

3. 점검기준

가.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
- 1) 가스계량기(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) 출구에서 배관·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
- 2)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
- 3) 연소기마다 퓨즈콕·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
- 4) 호스의 “T”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
- 5)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의 보일러·온수기 설치 여부
- 6)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(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) 설치 여부
- 7) 배기통재료의 내식성·불연성 여부
- 8) 배기통의 막힘 여부
- 9)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나.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
- 1) 용기의 고정상태와 용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
 - 2)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
- 다.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- 1)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
 - 2) 가목1)부터 9)까지에 적합 여부